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-34호

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(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3-55호)』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월 23일
중 소 기 업 청 장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도출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
- 사업 추진중 국회,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, 타 법령의 개정사항 등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

2. 관련근거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20조

3. 주요내용

- 민간자부담 5% 이하로 조정시 광역시·도 경유(제3조제1항)
- 주차장관련 사업비를 시장별 지원한도 산정시 합산 제외(제4조제3항)
- 우선 지원대상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·고시된 전통시장을 추가(제8조제3호)
- 지원 제외대상 명확화(제9조제1항제4호·5호 및 제3항제3호)

- 지침 중대 위반사유 구체화 및 지원제외관련 조문 이관(제9조제4항·제5항)
- 지원 대상사업 추가(제10조제1항제6호)
- 아케이드 사업추진시 사전 동의율 완화(제11조제4항)
- 공설시장 재건축사업 신청시 사업설명회 결과 제출 의무화(제11조제8항)
-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규정 강화(제11조제9항·제10항)
- 사업완료후 임대료 동결에 합의한 곳에 대한 가점 확대(제13조제2항제5호·제7호)
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개정에 따른 예산신청서 제출기일 단축(제13조·제14조)
- 상인연합회 지회장의 시·도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신설(제13조제3항제4호)
- 사업계획 변경요건 강화(제19조제1항)
-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무상위탁 금지(제22조제1항)
- 사업완료후 지원효과 평가 이행력 제고(제25조제5항·제6항)
- 자구노력하는 시장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평가기준 개선(지침 별지 제1호 서식)
- 신청양식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절충, 시설물 활용도 제고(지침 별지 제5호 서식)
-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신청시 점포별 부담액을 결정(지침 별지 제9-1, 9-2호 서식)
- 기타 법령의 개정이나 기관명칭 변경 등을 반영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5. 공고방법 :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에 공고
6. 의견제출 :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(안)』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처 :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
 -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전자우편
 - * 방문, 우편 : 대전 서구 선사로 139(둔산동 920) 정부대전청사
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과(☎ 042-481-4516)
7. 기타사항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(안)을 마련하는 과정(정부합동점검, 워크숍 등)에서 제출·검토된 의견과 동일한 사안은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